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- 55호

2017년도 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『2017년도 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17. 2. 1 중소기업청장

I. 기술보호 상담·자문

1. 사업 개요

•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안 수준 및 실태,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

2. 지원 내용

- · (지워분야) 보안정책, 보안시스템, 법률자문
- · (사전진단) 현장진단, 보안교육, 기초자문 제공(최대 3일)
- (심화자문)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및 복구,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세부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(최대 7일)

3. 지원대상 및 방법

•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• 신청방법 :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

• 제출서류 : 별도 제출서류 없음

∘ 문 의 처 :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(02-368-878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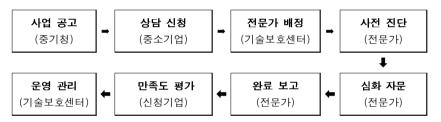
4. 지원 규모

• 사전진단(최대 3일) : 무료

• 심화자문(최대 7일) : 소요비용의 75% 지원

5. 지원 절차

<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·자문 지원절차 >



Ⅱ.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

1. 사업 개요

-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·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,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
 - * 임치물에 대해서는 '개발사실의 추정력' 부여(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3 제2항)

2. 지원 내용

-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(대·중소기업협력 재단)에 안전하게 보관하고, 기술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
-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 기업이 파산·폐업 등을 할 경우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 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
-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 평가(무료), 담보대출, 기술거래 등을 지원

3. 지원대상 및 방법
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- 신청방법 : 기술자료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)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(방문신청 가능)
- 제출서류 : 계약신청서, 임치물
- 문 의 처 :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(02-368-8787)
- **4. 임치 수수료**: 신규 300.000원/년(최초 임치계약시 납부), 갱신 150.000원/년

5. 지원 절차

<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절차 >



*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후 담보대출/기술거래 신청 가능

Ⅲ. 기술지킦서비스

1. 사업 개요

•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, 해킹·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·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킴(보안관제)서비스 제공

2.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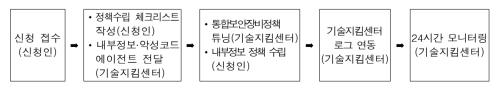
- 24시간×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·분석·평가
- E-mail, USB 등 온라인,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
-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PC내 중요자료 유출 예방 및 중앙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

3. 지원대상 및 방법
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- 。 신청방법 :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
-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
- ∘ 문 의 처 :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(02-3489-7050~3, monitor@kaits.or.kr)
- 4. 지원 규모: 무료(단, 장비임대료는 지원기업 부담)

5. 지원절차

< 기술지킴 서비스 지원절차 >



Ⅳ.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・중재

1. 사업 개요

- 비공개 조정·중재를 통해 신속·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
- 전·현직 판사, 변호사, 기술전문가 등 3~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

2. 지원 내용

-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
-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(필요시, 기술보증기금과 연계)
-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(최대 500만원)
-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, 상대 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(최대 500만원, 피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최대 1,000만원)

3. 지원대상 및 방법
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*
- * 단, 중견기업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상시 신청
- 제출서류 : 분쟁조정·중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증빙자료 등
- ∘ 문 의 처 :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(02-368-8787)

- 4. 지원 규모: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소요비용
 - * 단,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(조정은 1~5만원,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)

5. 지원 절차

<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지원절차 >



V. 문의 및 연락처

기관명	연락처
중소기업청	국번없이 1357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	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 : 02-368-8787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	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: 02-3489-7050